

이사회 운영 규정

제정 2021. 06. 09.

개정 2021. 12. 2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남양주시체육회(이하 “본회”라 한다) 이사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사회 운영에 관하여 법령과 본회 정관에서 별도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21. 12. 21.)

제3조(구성)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이사(이하 “임원”라 한다)로 구성 한다.
단,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21.)

제4조(기능) ① 이사회는 정관 제18조에서 정한 주요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1. 12. 21.)
② 삭제 (2021. 12. 21.)
③ 삭제 (2021. 12. 21.)

제5조(의장) ① 이사회의 의장은 회장이 된다.
②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진행 및 업무를 진행할 수 없을 때에는 회장이 지명한 부회장 또는 부회장 중 연장자 순으로 직무를 대행하며 부회장이 없을 경우 이사 중 연장자 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1. 12. 21.)

제6조(회의)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한다.
② 정기이사회는 매년 2월 이내에 개최하고, 임시이사회는 본회 정관 제19조의 에 의거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개정 2021. 12. 21.)

제7조(이사회 소집) ① 회장이 이사회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개최 5일전에 그 목적 등을 명시하여 “별지 제3호 서식”으로 각 이사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회장이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라고 인정할 때에는 회의개최 전일까지 통지하고 소집할 수 있다.

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5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회를 소집요구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5조 제2항에서 정한 회장직무대행자가 의장이 되어 운영한다.

제8조(감사보고 등) ① 감사는 정관 제28조제4항에 따라 시정요구 및 보고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회장에게 이사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21.)

②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회의 재산사항이나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9조(부의절차) ① 이사회에 부의할 안건은 소관부서에서 입안하여 관계 부서의 협의를 거친 후 회장의 결재를 받아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부의안을 회의개최 15일전까지 사무국장(이하 “간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사항은 회의 개최 전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② 간사는 부의안의 접수순서에 따라 의결안건과 보고안건을 구분하여 “별지 제2호 서식”의 관리대장에 의안번호를 부여하고 기록 관리하여야 하며, “별지 제3호 서식”의 이사회소집통지서와 함께 임원 및 감사에게 이사회개최일 5일 전까지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의안설명) 의안설명은 부의안건 제안 부서장(이하 “국장”이라 한다)이 설명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관계 직원을 출석시켜 의안에 관한 설명이나 의견 등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개의 및 의결)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

- ②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서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다만,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 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결사항에 대하여 재적이사 과반수이상이 이사회에 부의할 것을 요구할 때에는 회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 ④ 삭제 (2021. 12. 21.)

제12조(의결사항 통보) 삭제 (2021. 12. 21.)

- 제13조(재심요청)** ① 회장은 이사회의 의결사항 중 집행상 중대한 문제 발생이 예상된다고 판단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10일 이내에 이사회에 재심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재심 결정시까지 시행을 보류한다.
- ② 제1항에 의하여 재심을 요청할 경우에는 심의자료를 보완하여 부의 하여야 하며, 30일 이내에 결정하여야 한다.

- 제14조(간사)** ① 이사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이사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사무국장이 된다.
-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이사회의 회의록 작성 및 관리
 2. 이사회의 소집 및 심의결과 통보에 관한 사항
 3. 기타 이사회 의사관리에 관한 사항

- 제15조(회의록 작성 및 보존)** ① 이사회의 의사진행 및 의결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별지 제4호 서식”에 의거 작성하고 의장 및 감사와 의장이 지명하는 출석부회장 2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21.)
- ② 이사회의 회의록 및 부의안은 이사회의 운영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보존관리한다.

- 제16조(실비보상)** 회장은 회의에 참석한 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소정의 여비 및 실비를 보상할 수 있다.

제17조(권한의 위임) ① 이사회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본회 정관 제18조에 의한 권한의 일부에 대하여 일정한 범위를 정하여 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21.)

② 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을 위임받아 처리한 경우에는 이사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별지 제1호 서식](제9조 관련)

이사회 부의안

의안번호	제 호	안건종류	<input type="checkbox"/> 의결사항 <input type="checkbox"/> 보고사항
제안부서		제 안 자	
건 명			
<p>1. 의결주문 :</p> <p>2. 부의근거 :</p> <p>3. 제안사유 :</p> <p>4. 주요골자 :</p> <p>5. 참고사항 :</p>			

[별지 제2호 서식](제9조 관련)

이사회 의안관리대장 (의결안건, 보고안건)

회의차수	년 월 일	의안번호	건 명	제안부서	의 결 내 용

[별지 제3호 서식]

이사회 소집통지서 (제9조 관련)

수 신 :

제 목 : 이사회(정기·임시) 회의 개최

다음과 같이 년도 제 회 (정기, 임시)이사회 소집을 통지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일 시 :
2. 장 소 :
3. 부의의안

의안번호	건 명	제 안 자	소 관 부 서

년 월 일

남양주시체육회장 (인)

[별지 제4호 서식]

이사회 회의록 (제15조 관련)

제 회 (정기, 임시)이사회 회의록

년 월 일

남양주시체육회

(1면)

제 회 (정기, 임시) 이사회 회의록

1. 회의일시 :
2. 회의장소 :
3. 출석상황 :

재 적 임 원				출 석 임 원			
계	회 장	부회장	이 사	계	회 장	부회장	이 사

※ 불참임원 : 명

4. 의 장 :
5. 기록자 :

의장이 년도 제 회 (정기, 임시)이사회 개회 선언에 이어 제안자의 제안 설명으로 심의하며, 별첨과 같이 토의 및 의결하고 산회하다.

별첨 : 이사회 의결서 1부.

년 월 일

남양주시체육회

(2면)

제 회 (정기, 임시)이사회 의결서

회의일시	년 월 일(요일) 00:00 ~ 00:00
부의안건	(기재요령) 제 호 의안 (안) 제 호 의안 (안)
안건내용	별 첨
의결사항	(기재요령) 1. 부의안건 제 호(안)을 다음과 같이 의결한다. ("원안의결", "수정의결", "원안유보", "부결"....등으로 기재) 2. 3.
위와 같이 의결함.	
년 월 일	
의 장	서명 또는 날인
부회장	서명 또는 날인
부회장	서명 또는 날인
감 사	서명 또는 날인
이 사	서명 또는 날인